

日本の 농산물 비관세 장벽

■ 日本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식생활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日本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91년의 경우 日本은 300억弗정도의 농산물을 수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시장에 韓國 농산물의 수입비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경쟁국가와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열세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농산물에 대한 日本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도 對日농산물 수출의 부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다음은 日本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편집자註 ■

1. 유형별 비관세장벽 실태

국제무역에서 흔히 NTB(Non Tariff Barriers)로 약칭되는 비관세 장벽이란 수입을 방해하거나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부정책이라고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수량제한 등을 포함한 수입제한조치, 수입대체 또는 수출촉진을 위한 생산지원 정책, 세관 및 행정상 수입절차, 기준 및 규격제도, 동식물 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하는 정부의 정책조치가 아니더라도 유통구조 및 상거래 습성 그리고 소비습성 등에서 기인하는 수입제한 효과도 비관세 장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の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비단 여러 관계문헌

을 통해서는 물론 실제로 많은 수출업자들에 의해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日本の 비관세장벽 실시형태를 살펴보면 歐美선진국들이 주로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부과 등 관세나 기타 가격메커니즘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도 등의 직접적인 양적수입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양적 수입규제외에도 日本은 엄격한 규격 및 검사제도 기준·인증제도, 국영무역,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등의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입장벽을 쌓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상품의 진로에는 이러한 정부에 의한 각종 수입장벽외에도 민간에 의한 사업자 단체 결성에 의한 차별, 商慣行, 유통구조의 폐쇄성 등도 높은 수입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유형별 일본의 비관세장벽

	유형	내용
I 유형	일본정부의 수입규제	· 수입쿼터제(Quotas) · 수입사전허가제(Import Licences)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Customs)
II 유형	정부의 무역활동 개입	· 국영무역(State Trading) ·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III 유형	표준규격	· 위생안전표준(Health Safety Standards) · 상표(Labeling Requirements) · 제품검사절차(Product Testing Procedures)
IV 유형	사회·상관행	· 문화·상관습(Cultural Business Practices) · 국내공급자 선호(Domestic Supplier Preference Requirements) · 유통구조(Distribution Systems)

〈표 1〉은 일본의 유형별 비관세장벽을 제시한 것이다. 모두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III유형의 대부분과 IV유형이다.

대개 이것들은 오래전부터 사회·문화구조속에 깊숙히 배어든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포착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루 아침에 제거가 곤란한 것들이다. 일본의 많은 비관세장벽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의 또 다른 특징은 때때로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수입제한이 필요할 때는 동식물검역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필요할 때는 다소 완화된다.

2. 일본의 농산물 비관세장벽 개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은 막대한 농업보조정책과 주요품

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오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입수량, 할당제, 국영무역, 기준 및 인증제도 등이다.

가.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도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 일정한기간내에 수입할 수 있는 총 한도를 국내수요 등에 의거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대해 통산성이 일정한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할당하며, 이 수입할당을 받지 못하면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없게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수입할당제도는 수입수량 및 금액의 제한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본이 가장 명확하며,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제도자체는 물론 그 운용상의 문제로 제외국의 비판이 드높다.

'74년 이래 '88년 12월까지 밀크크림, 쇠고기, 쌀 등 22개의 농산물에 대해 실시해 오고 있는 日本은 '87년 美國의 제소에 의한 GATT 패널, 권고에 따라 쇠고기를 포함한 8개품목에 대해서는 수량제한 조치를 철폐한 바 있고 땅콩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확대키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日本은 밀크크림, 무당분유, 곡물분, 쌀 등 11개의 농산물과 설탕에 대해서는 수량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물론 UR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이같은 수량 규제조치는 관세화로 전환될 것이다.

나. 국영무역(State Trading)

국영무역이란 국가가 수입 및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활동에 있어서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특정 정부기관에 이 특권을 위임하여 전담케 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국영무역은 그 대행기업에 의해 국내시장상태에 따라 수입량을 임의로 변경케 함으로써 국내공급자를 부단히 보호할 뿐 아니라 수입상품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 있으므로 저렴한 수입상당의 재판매 가격을 국산품 가격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한 국영무역을 임의로 특정 해외공급자를 쉽게 차별할 수 있으며 국영무역의 생산품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원자료나 중간재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통제하기도 한다.

日本에 있어서 국영무역품목으로 특별 취급되고 있는 품목은 쌀, 밀, 보리, 쌀보리, 버터 등인데 이들 품목은 전부 수입쿼터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특정 정부기관에 의해 독점

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 수입해당품목과 상이하다.

구체적인 제도운용실태를 보면, 쌀, 밀, 보리 등은 식품관리법에 그리고 유제품은 가공원료유생산자 보조금 등의 잠정조치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국영무역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창구를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일원화시키고 이 이외의 수입루트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창구가 정부에 의해 일원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입수량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영무역이 보호수입쿼터제보다 강력한 수입규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기준·인증제도(Standards)

기준·인증제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및 복리 등을 목적으로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일정한 표준규격을 정하여 이를 상품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제규정들은 직접적인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등 수출업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무역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이들 다양한 제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며 또한 규정예의 적합여부를 수입국에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검사절차상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가능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 수입국이 제규정을 자주 그리고 갑자기 변경시키는 경우 수출국은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과중해지고 동시

에 손실이 커지게 된다.

기준 및 인증제도와 관련한 日本의 비관세장벽으로는 △ 보건·위생 △ 검사절차 △ 상표부착 등이 있다. 이중 보건·위생에 관한 주요 표준규정으로는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방법 등이 있다.

먼저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첫째, 日本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관계 법령에 열거된 첨가제만이 식품의 향료 및 보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에도 관련법령에 열거된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첨가제를 관련법령의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이는 對日수출비용을 증가시키고 對日수출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식료품의 내용물표시가 필요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야채통조림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내용물표시를 간단히 Mixed Vegetable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혼합된 야채의 하나하나에 관해서 日本語로 명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수입 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수입 연월일은 선박의 입항일을 정확히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는 첨부될 수입 연월일의 인쇄물을 준비할 수 없다. 이는 수입품에 대하여 유통과정상의 특별경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통의 원활화를 저해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차별요인이 된다.

검역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으로는 첫째, 화훼류, 과일, 채소류 등에서 진딧물과 같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처리시키거나 반송한다.

둘째, 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동물검역소의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희망수입량 및 희망수입시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수입업자는 가축수출입협의회가 지정하는 시기 및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검사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검사를 위한 요구서류가 복잡하고 해외에서 행해진 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검사 장소에 있어서 日本에서의 현지검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검사기관이나 검사시설을 잘 인정치 않음은 물론 日本검사원을 해외에 파견, 해외검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셋째, 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종류나 기타자료에 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업자들이 신속하게 충분한 검사준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기의 판매가능성마저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상표(Labeling Requirements)와 관련된 비관세장벽은 수입농산물의 상표에 대하여 그 크기나 형태 등을 규정하는 데서 파생되며 결과적으로 해외공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각 수입상품마다 수입업자명을 상표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수입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日本의 입항지에서 포장을 풀어 해당 日本수입업자의 이름을 상표상에 삽입토록 되어 있다.

3.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제도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대한 日本의 수입규제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사과와 배같은 일부 과실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식물 검역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잔류물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무·배추 등 채소류의 수입에서도 日本은 수입검사 자체를 지연시키고 해로운 곤충이나 농약 등을 집요하게 발견

하려고 노력하여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혼증을 한후 통관을 승인한다.

혼증으로 이미 시들어 버린 채소는 상품으로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 일본의 주요 농산물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 US\$ 천(M/T))

품 목 명	수 출 액			현행관세율	비 관 세 장 벽
	1989	1990	1991		
돼지고기 (0203·29·0000)	57,585	31,681	20,861	5% (기준 수입가격 이하일 경우 차액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검역 규정 차별적용 및 수입물량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 통관전 100% 검사 - 미국산 : 통관후 유통과정에서 일부 샘플검사 - 비수기에는 전량검사등 검사강화 - 성수기에는 검사 완화 ○ 까다로운 검역일정으로 통관지연 ○ 항생물질 잔류합량 검사 기준치가 한국 및 미국검사기준치보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0.05ppm 이하 - 한국 및 미국 : 0.1ppm 이하
닭고기(절단육) (0207·41·00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 ○ 통관시 수출국 정부발행 동물검역 증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 인근 반경 50km 이내에서 과거 3년간 콜레라, 페스트 등의 발병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훼류 (0602·99·10)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방역법에 의한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정부발행 검사증명서 필요 - 샘플추출량 : 50% 이상(단, 일본검사원 선적전 검사시 1% 이상)
절화류(장미등) (0603·10·1000 2000 4000 6000 9000)	63 (4.8)	15 (0.7)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혼증으로 죽은 해충 발견시 전량폐기 조치 ○ 혼증판정으로 고액 혼증비 소요 및 선도와 광택 퇴화 ○ 과도한 정밀검사 및 통관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및 품위저하, 보관료 발생

품 목 명	수 출 액			현행관세율	비 관 세 장 벽
	1989	1990	1991		
양 파 (0703 · 10 · 1000)	1,362 (3,062)	-	150 (284)	10%	○ 탄력관세 적용 ○ 과도한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검사 - 일본내 분포 병해충 발견시에도 소독처리로 약해, 비용부담, 통관 지연
양 배 추 (0704 · 90 · 1000)	107 (232)	67 (156)	2,541 (4,170)	기본 : 10% 잠정 : 5%	○ 통관시 아국에서 훈증 및 식물검역증을 첨부 통관하고 있으나 현지 재검사로 검역지연 및 방역 강화 - 선도퇴화, 보관료, 고액의 훈증비 발생 ○ 경매시 한국산 차별로 일본산에 비해 30~50% 가격대 형성
배추(신선) (0704 · 90 · 2000)	24 (34)	-	2,004 (3,120)	"	"
무(신선) (0706 · 90 · 1000)	-	19 (36)	-	기본 : 10% 잠정 : 5%	○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검사(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송이버섯 (신선, 냉장) (0709 · 51 · 1000)	60,799 (805)	53,038 (827)	54,944 (309)	기본 : 10% 잠정 : 5% 양허 : 5% 특혜 : 무세	○ 식물방역법(검역) ○ 식품위생법(식품검사)
표고버섯(건조) (0712 · 30 · 1030)	4,208 (212)	3,306 (172)	2,206	기본 : 15%	○ 식물방역법(검역) ○ 식품위생법(식품검사)
밤(탈각하지 아니한것) (0802 · 40 · 1000)	972	313	196	기본 : 20% 잠정 : 16%	○ 식물방역법(검역) ○ 식품위생법(식품검사) ○ 까다로운 식품위생검사를 통한 수입 억제 - 제품서류 과다 - 검사에 상당기일 소요 - 건별 검사비용 부과
간 밤 (0802 · 40 · 2000)	73,121 (15,369)	88,511 (16,951)	95,200 (14,900)	"	○ 식품검역이 까다롭고 통관절차 복잡 ○ 매선적시 식물검역 필요 ○ 타국의 밤류 수입관세율(5% 정도) 보다 아국산은 고율관세임. ○ 현지 식품검역절차가 까다로움

품 목 명	수 출 액			현행관세율	비 관 세 장 벽
	1989	1990	1991		
사 과 (0808 · 10 · 1000)	-	1,050 (1,411)	14,245 (45,57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상 수입제한규정은 없으나 ○ 엄격한 검역 및 검역기준의 일관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 분포 병해충 발견시에도 소독조치로 무역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해로 상품성 저하 · 소독비용부담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 소독처리기간 대기로 통관절차 지연
감 귤 (0805 · 20 · 1000)	-	-	-	20%	○ 사과와 동일
배 (0808 · 20 · 1000)	-	2 (1)	40 (2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 과도한 정밀검사 및 제출서류 복잡 ○ 혼중판정으로 고액의 혼중비 소요 및 선도, 광택 퇴화로 판매불가 ○ 통관지연으로 선도토화 및 보관료 발생 * '91년 1월 한국냉장은 신고배를 일본 요코하마에 통관신청한 바 있으나, 일본검역소의 장시간의 정밀검사로 혼중조치되어 만부득이 국내로 회항한 일이 있음.
복숭아 (0809 · 30 · 0000)	-	-	27 (51)	20%	○ 식물검역절차 번잡
단 감 (0810 · 90 · 2000)	-	-	-	20%	○ 사과와 동일
감 (0810 · 90 · 4000)					○ 사과와 동일
기타과실(매실) (0810 · 90 · 9000)	32 (22)	2 (0.4)	73 (36)	30%	○ 과실류에 적용되는 일반적 비관세 장벽
냉동딸기 (0811 · 10 · 0000)	11,363 (7,387)	11,957 (7,192)	5,038 (3,169)	기본 : 20% 잠정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 분포 병해충 발견시에도 소독 조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 ○ 가당딸기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때 1/4 추가 관세 부과 가능

품 목 명	수 출 액			현행관세율	비 관 세 장 벽
	1989	1990	1991		
감(건조:곶감) (0813·40·1000)	156 (26)	78 (12)	192 (22)	기본:20% 잠정:15% 양허:15%	○ 식물방역법(검역) ○ 식품위생법(식품검사)
참깨리의 것 (분과조분) (1106·20·1000)	231 (33)	269 (43)	343 (53)	기본:25%	○ 식품위생법(식품검사)
간디종자 (1209·99·4000)	1,043 (25)	1,990 (45)	725 (34)	기본:15% 잠정:무세 양허:무세	○ 식물방역법(검역)
한 약 재 (1211·90·9000)	15,147	12,988	12,826	10%	○ 식물검역을 위한 명목으로 통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
삼 아 피 (1404·90·2020)	799 (73)	939 (101)	907 (86)	기본:10%	○ 식물방역법(검역)
떡 갈 잎 (1404·90·3010)	3,512	2,592	1,747	기본:10% 특혜:무세	○ 식물방역법(검역)
명 개 잎 (1404·90·3020)	1,267	1,289	1,221	기본:10% 특혜:무세	○ 식물방역법(검역)
소맥분조제품 (PRE-MIX) (1901·90·9000)	7,270	4,992	3,968	24%(설탕 15% 미만) 28%(설탕 15% 50%) 30%(설탕 50% ~85%) * 국내 11%	○ 수출국 등록공장제도의 막연한 시 행방침으로 비관세 장벽화 될 소지 가 우려됨. ○ 배합가루의 통관 그물체 규격이 엄 격함(100%).
미과(Rice- Cracker) (1905·90·1050)	1,780 (694)	1,768 (777)	1,473 (736)	35%	○ 관세장벽에 해당
오이통조림 (2001·10·0000)				12%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
양송이통조림 (2003·10·3000)				25%	○ 식품위생검사 ○ 고급원료제품만 수입

품 목 명	수 출 액			현행관세율	비 관 세 장 벽
	1989	1990	1991		
김 치 (2005 · 90 · 1000)	10,543 (3,514)	10,364 (3,385)	12,438 (3,821)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지시 1/4의 추가 관세 부과 ○ 식물검역 ○ 규격요건 강화 ○ 방부제 함유품 통관 불허 ○ 성분분석표, 식품공정 과정표의 내용검사에 7일이상 소요 ○ 성분분석표, 식품공정과정표에 대한 과도한 분석 데이터 요구 ○ 표기 및 내용물에 약사법 적용
버터땅콩(피넛) (2008 · 11 · 9000)	340 (1,657)	2,510 (1,779)	4,233 (2,211)	25% 3%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품목에 비해 관세가 높음. ○ 수입품에 한하여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화할 계획임.('92년 상반기중)
밤통조림 (2008 · 19 · 1000)	6,292 (2,223)	4,582 (1,684)	3,472 (1,032)	기본 : 35% 특혜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
밀감통조림 (2008 · 30 · 00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 요구 ○ 불공정 GSP 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은 3~5% 적용하나 한국산은 10%이상 적용 ○ 식품위생검사
복숭아통조림 (2008 · 70 · 00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제 유효제등의 사용여부 검사 ○ 원산지 증명 요구 ○ 불공정 GSP 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은 3~5%를 적용하나 한국산은 10%이상 적용 ○ Buyer의 재검사
건포도통조림 (2008 · 99 · 100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제 유효제등의 사용여부 검사 ○ 원산지 증명 요구 ○ 불공정 GSP 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은 3~5%를 적용하나 한국산은 10%이상 적용 ○ Buyer의 재검사
단팥앙금 (Red bean paste) (2106 · 90 · 9090)	300 (672)	360 (614)	204 (33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장벽에 해당

품 목 명	수 출 액			현행관세율	비 관 세 장 벽
	1989	1990	1991		
기타식품 (과자류, 젓갈류, 건강식품, 음료수, 라면류, 소스류 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절임류에 대한 과도한 경계에 의한 정밀검사, 공정과정 분석 요구 ○ 건강식품에 관한 표기 및 내용물의 약사법 적용 ○ 식품은 6개월, 음료는 3개월마다 통관시 고액의 검사료(5만弗)와 통관 지연 ○ 성분 분석표, 식품공정과정표의 내용검사에 한 품목당 7일 이상 소요 되어 통관 난해

(KOTRA 해외시장/商開部 - 律 - PD-0417)

第 114 號

- 1970年 10月 28日 登錄/마-355호
 - 1992年 5月 30日 發行(5月號)
 - 發行兼 編輯人/千命基
 - 發行處/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 瑞草區 方背洞 1002-6)
 - 印刷人/(株)一志文化社 電話/503-9901~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실천강령을 준수한다.

食品工業